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9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2,600,000원, 지방교육세 2,260,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650,000원, 지방교육세 565,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0

가. 원고는 2020. 6. 1. [redacted]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565,000,000원에 매수하여 2020.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22,600,000원과 지방교육세 2,260,000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20. 7. 2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중 5,650,000원, 지방교육세 중 56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7. 22. 스스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0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0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